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고영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의 상황 및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경감 부담 및 지원대상의 의료적 필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3조)
- 3) 지원대상, 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등(안 제4조 및 제5조)
- 4)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과 수행기관 선정 취소(안 제6조 및 제7조)
- 5) 예산의 지원 및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어르신등의 병원 방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을 하며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
나)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3조)

-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방법, 신청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규정함

다) 지원대상, 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등(안 제4조 및 제5조)

- 지원대상 :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등

라)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과 수행기관 선정 취소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어르신·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을 관내 사회복지 시설 기관 등으로 규정함

마) 예산의 지원 및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)

3)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장애인의 병원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